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1999. 12. 29. 판결선고	
1999. 12. 29. 원본영수	인

사 건 99가합9571 주주총회결의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삼성전자주식회사

변 론 종 결 1999. 12.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9. 3. 20.자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제2호 안전에 관하여 한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



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반도체 및 관련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고, 발행할 주식을 1주당 금 5,000원인 주식 500,000,000주(수권자본금 2,500,000,000,000원)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현재 총 발행주식은 148,667,060주이고 그 중 의결권있는 주식은 108,699,111주(이하 주식은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르킨다)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원고 A이 10주, 원고 B이 1,362주, 원고 C이 147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7개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제30기 정기주주 총회(이하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1999. 3. 20. 09:00경 서울 중구 순화동 7 소재 중앙일보사 호암아트홀에서 개최하였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의 일부 주주들은 1999. 1. 18. 피고 회사에 대하여 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신주인수권 및 전환사채 배정관련 조항의 개정, ②이사회 및 개별이사의 권한강화, ③주주의 권한강화, ④내부거래에 대한 감독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일부 변경의 건을 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주주제안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주주제안의 취지를 일부 수용하고, 관련법령의 개정 에 따른 변화를 정관에 반영하고자 별지1 목록 기재 제2호 안건(이하 제2호 안건이라고



한다)인 ‘정관일부 변경의 건’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 주주제안에 따른 ‘정관일부 변경의 건’은 별지1 목록 기재 제3호 안건(이하 제3호 안건이라고 한다)으로 상정하였다.

마. 피고 회사와 원고 C, A(이하 원고 C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의 주주 중 1,000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각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면서 피고 회사는 각 안건별로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원고 C등은 제2호, 제3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조항별로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와 원고 C등은 각 자신들을 지지하는 주주들로부터 각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바. 위 주주총회에서 제2호 안건을 심의, 표결함에 있어 의장인 소외 D이 위 안건에 대하여 일괄표결방식으로 표결을 하려고 하자 원고 C은 위 안건에는 피고 회사의 투명한 경영에 관련된 중요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석한 주주들은 각 조항들이 주주들과 회사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고, 원고 C등은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조항별로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대리행사를 위임받았으므로 일괄표결방식으로 표결을 할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위임한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항별로 축조 심의 및 표결을 하자고 동의(動議)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다.



사. 그러나 위 D 및 피고 회사의 고문변호사인 소외 E는 먼저 일괄표결방식으로 표결을 한 다음 부결될 경우에 다시 조항별로 표결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표결 방법이고, 제2호 안건에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거나 불가분의 성격을 가지는 조항들이 많은데 피고 회사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위임한 주주들은 이를 고려하여 위 안건 전체에 대하여 찬반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조항별 축조 심의 및 표결방식은 피고 회사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위임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 C의 위 조항별 축조 심의 및 표결에 대한 동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채 일괄표결방식으로 투표를 하여 위 안건은 출석 주식수 79,760,499주 중 찬성 주식수 65,909,463주(출석주식수의 82.63%, 총 주식수의 60.63%)로 가결되었다.

아. 다음으로 제3호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고들을 비롯한 제3호 안건의 제안자들은 제3호 안건에 대한 별지4 목록 기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위 D은 위 안건 제안자들의 동의하에 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표결방식으로 표결에 붙여 위 안건은 출석 주식수 72,852,868주 중 찬성 10,918,599주(출석주식수의 14.98%)로 부결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의 제2호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는 그 결의방법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위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1) 그러므로 먼저 제2호 안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 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 제3항에 규정된 주주에게 질의권을 부여하고, 제16조·제16조의 2를 개정하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주배정의 원칙을 명시하되, 긴급한 자금조달등이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결의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주이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24조·제26조를 개정하여 이사의 선임 및 보선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제24조의 2를 신설하여 주주대표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 위 위원회에서 2인 이내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제40조를 신설하여 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는 이사회결의를 승인 받도록 하였다.

(2) 의사진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장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당연히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심의의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반영되도록 의사진행을 하여야 하는바, 의장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의안의 내용과 질의 내용,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의 및 표결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의장이 정한 심의 및 표결방법에 대하여 주주들이 부적합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동의가 제출되고 그 동의가 성립하면 의장은 총회에 물어 그 결의로서 심의 및 표결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제2호 안건 중에는 소수주주대표의 이사회진출을 가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02

게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신설된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비롯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소수주주와 대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고, 원고 C등은 제2호 안건에 대하여 조항별로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대리행사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 안건에 대하여 일괄표결방식으로 표결할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위임한 주주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위 D이 위 안건에 대하여 일괄표결방식으로 표결에 불이려고 하자 원고 C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서 조항별 축조 심의 및 표결방식에 의할 것을 동의하고, 이에 대한 제청이 있었으므로,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주주들의 의사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심의 및 표결방법을 정하고, 의사진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를 진행하여야 할 소외 D으로서 먼저 원고 C이 제안한 조항별 축조 심의 및 표결방식에 대하여 총회에 그 가부를 물어 그 결의로서 심의 및 표결방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C의 위 동의를 무시한채 일괄표결방식으로 제2호 안건을 표결하여 가결처리하였는바,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결의는 그 의사진행방식 내지 결의방법이 신의칙에 반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안건별로 일괄 심의 및 표결하는 방식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유효할 뿐만 아니라 ②이 사건 주주총회는 조항별 심의 및 표결을 하지 않



앞음에도 8시간 이상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주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도 일괄표결방식이 불가피한 것이었고, ③제2호 안건과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주주들이 제안한 제3호 안건에는 위 집중투표제 배제 여부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조항이 있으므로 제2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의 및 표결한 뒤에도 제3호 안건에서 다시 심의, 표결할 수 있으므로 제2호 안건을 일괄표결방식으로 처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④일괄 심의 및 표결에 대하여 찬성하는 대다수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를 진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는 의장으로서도 일괄 심의 및 표결방식에 의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제2호 안건에 관하여 일괄 심의 및 표결방식으로 한 결의는 정당한 것이라고 다룬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안건별로 일괄 심의 및 표결하는 방식 자체가 무효이거나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고, ②주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절차적 정의를 무시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 C을 비롯한 소수주주들이 제2호 안건 전부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3호 안건 및 별지목록 기재 수정동의 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등 일부에 대하여만 반대하는 것이므로 조항별 심의 및 표결을 하더라도 그 소요 시간은 얼마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③제2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의, 표결한 뒤에도 서로 상반되는 부분은 제3호 안건에서 다시 심의, 표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제2호 안건에 관한 결의방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



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④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는 일괄 심의 및 표결에 대하여 찬성하는 주주들의 의견 뿐만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전체의 의견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반영하여 의사진행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다시, ①제2호 사건에 대하여 원고 C의 조항별 심의 및 표결에 대한 동의 및 재청 이전에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원고 C의 부수동의만을 우선처리할 수는 없고, ②부수동의는 반드시 원동의의 처리방식과 같은 형식적인 표결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바, 조항별 심의 및 표결방식에 대하여 대수 주주들이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D은 의장의 권한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그 의사를 확인하고 원고 C의 위 부수동의를 부결처리한 다음 제2호 사건에 관하여 일괄표결방식에 의하여 표결하였으므로 그 결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주주총회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인 사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는 단지 의장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을 것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달리 새로운 동의라고는 할 수 없으며, ②표결방법에 대한 동의와 같은 부수동의를 성립한 경우에, 의장은 그 처리를 반드시 형식적인 표결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전체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그 가부를 물어 그 결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소의



D은 원고 C의 위 부수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일괄표결방식으로 제2호 안건에 관하여 표결에 붙혔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내용이나 피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취소는 부적당하므로 상법 제379조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하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하자가 아니고, 원고 C의 표결방법에 대한 부수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하자인 점, 제2호 안건은 출석주주 82.63%의 찬성으로 가결된 점, 위 집중투표제 배제등에 관하여 제2호 안건과 서로 상반된 제3호 안건의 수정동의안이 출석주주 14.98%만의 찬성으로 부결된 점, 제2호 안건에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수주주들의 주주제안 중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주우선 배정원칙 명시, 이사회와 경영위원회 감독의무와 책임 명시,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 및 주주질의에 대한 15일 이내 답변의 의무화, 사외이사 상한선의 폐지등이 수용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는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로 인한 대외신인도의 하락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파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함이 상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02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하자가 있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부
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법 제379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999. 12. 29.

재판장 판사 오철석 _____

 판사 윤상도 _____

 판사 김용호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2

별지1

안 건 목 록

(안건목록 삭제)